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안연월일 : 1998년 7월 14일
제안자 : 이현영 의원 외 2

1. 제안이유

98. 4.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3인에서 12인으로 1명이 줄어들어 인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를 제3대 군의회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2개의 의회관련 조례를 본 조례 부칙규정으로 개정코져 함.

2. 주요골자

- 가. 종전의 3개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의 5개 관련 조항을 삭제 (현행조례 제2조 내지 6조)
- 나. 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항의 일부수정 (안 제2조)
- 다.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규정한 조항의 일부수정 (안 제4조)
- 라. 거창군의회공인조례의 상임위원장 직인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규정을 삽입 (부칙안 제2조제1항)
- 마.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 (부칙안 제2조제2항)
- 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중 환경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변경 (부칙안 제2조제2항)

3. 개정근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를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회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처리와 재해대책·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를 제3조로 한다.

제9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위원회 위원인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를 제6조로 한다.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13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의회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별표] 공인의 규격중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창군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 : 1.8Cm

②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 한다.

제2조제1항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중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를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를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4호중 “환경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무위원회 6명 2. 산업.건설위원회 6명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삭제)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무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수송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의회운영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제)

현행	개정안
<p><u>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u></p>	
<p>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p> <p>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p>	(삭제)
<p>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삭제)
<p>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p> <p>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p> <p>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p>	(삭제)

현행	개정안
<p>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p>	
<p>제7조 (특별위원회) ①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의회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처리와 재해대책·중요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p>	<p>(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p>
<p>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생략)</p>	<p>제3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행과 같음)</p>
<p>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p>	<p>제4조 (위원의 선임)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10조</u> (위원장의 직무) (생략)</p>	<p><u>제5조</u> (위원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p>
<p><u>제11조</u> (간사) (생략)</p>	<p><u>제6조</u> (간사) (현행과 같음)</p>
<p><u>제12조</u> (소위원회) (생략)</p>	<p><u>제7조</u> (소위원회) (현행과 같음)</p>
<p><u>제13조</u> (준용규정) (생략)</p>	<p><u>제8조</u>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거창군의회공인조례개정)

(부칙안 제2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p>제2조 (종류) ① (생략)</p> <p>② (생략)</p> <p>2.거창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p> <p>[별표] 공인의 규격</p> <p>3.거창군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u>1.8Cm</u></p>	<p>제2조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2.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p> <p>[별표] 공인의 규격</p> <p>3.거창군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 : <u>1.8Cm</u></p>

신·구조문대비표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

(부칙안 제2조제2항 관련)

현행	개정안
<p>제2조 (감사)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제3조 (조사)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p> <p>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생략)</p>	<p>제2조 (감사) ① ----- ----- ----(삭 제) ----- -----.</p> <p>② ----- -----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제3조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4.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송대관리사무소, <u>환경사업소</u>.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4. ----- ----- ----- (----- -----)-- ----- ----- --, <u>수도사업소</u>. ----- ----- -----.</p>